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방 부 소 관
방 위 사 업 청 소 관

2025. 6.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II. 심사경과	2
II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3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7
V. 대체토론의 요지	29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0
VII. 찬반토론의 요지	33
VIII. 심사결과	34
※ 별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35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6.

국방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국방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2. 방위사업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6. 23.

2. 회부일자 : 2025. 6.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방부 소관

–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6. 26) 상정, 심사, 수정의결

제2차 국방위원회(2025. 6. 26) 상정, 심사보고, 수정의결

Ⅲ.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국방부 소관】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					전년대비 (C-A)	
			본예산 (B)	%	추경예산(안) (C)	%	증감 (C-B)		
국방비	594,244	100.0	612,469	100.0	613,892	100.0	1,423	19,648	3.3
전력운영비	417,712	70.3	434,007	70.9	435,430	70.9	1,423	17,718	4.2
방위력개선비	176,532	29.7	178,462	29.1	178,462	29.1	-	1,930	1.1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은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에만 1,422억 6,000만원(증액 2,227억 6,000만원, 감액 805 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방위력개선비,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 국방부 소관 추경 증액분 1,422억 6,000만원은 총 9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병 인건비(기본급 △597억원), 건강보험부담금(건강보험료 △208억원), 병영생활관(임시숙영시설 설치확대 등 113억 1,600만원), 병영기본지원시설(전투체육시설 확충 등 526억 5,500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간부숙소 신축 등 105억 6,900만원), 정비 및 보급시설(정비고·탄약고 신축 등 198억 7,400만원), 일반지원시설(기지 비상전원체계 보강 등 622억 2,100만원), 경계 및 작전시설(활주로 재포장 사업 등 248억 9,500만원), 시설유지관리(병영세탁방 보수사업 등 412억 3,000만원)

2. 세입

(단위: 억 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			전년대비 (C-A)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증감 (C-B)	(C-A)	%
계	14,612	24,019	24,019	0	9,407	64.4
일반회계	2,419	3,295	3,295	0	876	36.2
특별회계	12,193	20,724	20,724	0	8,531	70.0

- 국방부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과 변동 없이 2조 4,019억 원으로 유지되었음.

3. 세출

(단위: 억 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			전년대비 (C-A)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증감 (C-B)	(C-A)	%
계	429,905	454,732	456,154	1,423	26,249	6.1
일반회계	417,712	434,007	435,430	1,423	17,718	4.2
특별회계	12,193	20,724	20,724	0	8,531	70.0

- 국방부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만 1,423억 원이 증액되어 45조 6,154억 원으로 조정되었음.

4.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별	2024 예산 (A)	2025 예산			전년 대비 (C-A)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증 감 (C-B)	(C-A)	%
계	41,771,198	43,400,743	43,543,003	142,260	1,771,805	4.2
□ 병 력 운 영	24,329,179	25,351,601	25,271,101	△80,500	941,922	3.9
○ 인건비(법정부담금포함)	17,981,466	18,813,437	18,732,937	△80,500	751,471	4.2
○ 급식 및 피복비	2,630,154	2,529,400	2,529,400	-	△100,754	△3.8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3,717,559	4,008,764	4,008,764	-	291,205	7.8
□ 전 력 유 지	17,442,019	18,049,142	18,271,902	222,760	829,883	4.8
○ 국방정보화	761,009	806,786	806,786	-	45,777	6.0
○ 장비보전 및 복지향상	1,517,147	1,789,034	1,789,034	-	271,887	17.9
○ 군수지원 및 협력	6,444,772	6,611,912	6,611,912	-	167,140	2.6
○ 군인사 및 교육훈련	870,103	865,333	865,333	-	△4,770	△0.5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5,111,828	5,098,634	5,321,394	222,760	209,566	4.1
○ 예비전력관리	241,502	264,598	264,598	-	23,096	9.6
○ 책임운영기관 운영	250,865	260,027	260,027	-	9,162	3.7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547,740	1,584,458	1,584,458	-	36,718	2.4
○ 국방행정지원	697,053	701,305	701,305	-	4,252	0.6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67,055	67,055	-	67,055	순증

○ 프로그램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부
문에서 2,22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부문에서 805억원이
감액되었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방부 소관]

1. 총 괄

○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추경 편성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것(시급성), ②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어려울 것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보충성), ③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적합성), ④ 당해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급성, 보충성, 적합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의 추진 배경인 경기 부진 심화로 인한 민생 어려움 가중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정부 제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²⁾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가 국가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의 추경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과 관련하여 편성된 개별 사업들이 시급하고, 소규모 건설업체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적절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사업내역별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전기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2. 검토의견

(1) 병 인건비(1101-153): 입영률을 고려한 추가 감액여부 검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추경안 편성내역

○ 병 인건비 사업은 병사의 봉급(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3조 7,092억 7,400만원 대비 597억원(△1.6%) 감액된 3조 6,495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병 인건비 사업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병 인건비	3,265,526	-	3,709,274	3,709,274	3,649,574	3,649,574	△59,700	△1.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 인건비 사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 봉급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 국방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가 재정여건과 입영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을 고려하여, 병 기본급 예산 3조 6,899억 6,100만원 중 597억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하였음.
- 2025년은 병 봉급 인상의 마지막 해³⁾로,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입영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4년보다 높은 입영 계획 인원을 반영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해, 다음의 표와 같이 매년 6~7만 명 규모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병 입영 실적은 매월 계획인원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3) [병 기본급여 인상 내역] (단위: 원,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인상률
병장	1,250,000	1,500,000	250,000	20.0
상병	1,000,000	1,200,000	200,000	20.0
일병	800,000	900,000	100,000	12.5
이병	640,000	750,000	110,000	17.2

자료: 국방부

4) 병 입영 계획인원은 2024년 205,659명, 2025년 205,977명임

[연도별 19~21세 남성 주민등록인구]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인구수	908,267	837,539	776,594	709,784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5년 월별 입영률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계 획	17,615	19,478	17,236	18,536	20,079	16,779	16,260	21,974	15,575	19,554	15,842	15,605
	입 영	16,819	17,764	15,528	18,718	19,844	15,800	15,462	20,077	14,162	14,233	7,295	10,499
	%	95.5	91.2	90.1	101.0	98.8	94.2	95.1	91.4	90.9	72.8	46.0	67.3
2023년	계 획	21,079	17,312	17,728	20,981	20,014	17,889	16,958	18,279	12,860	20,497	14,066	16,247
	입 영	20,065	17,428	17,861	21,062	19,616	16,788	15,775	16,592	10,972	14,036	6138	10,855
	%	95.2	100.7	100.8	100.4	98.0	93.9	93.0	90.7	85.3	68.5	43.6	66.8
2024년	계 획	21,914	15,503	17,085	22,551	16,707	17,158	18,008	17,048	15,183	14,590	14,331	15,581
	입 영	20,890	15,650	17,168	22,646	16,695	16,785	17,521	15,895	13,684	11,809	8,149	8,974
	%	95.3	100.9	100.5	100.4	99.9	97.8	97.3	93.2	90.1	80.9	56.9	57.6
2025년	계 획	10,399	18,071	19,115	20,473	14,177	21,352	16,409	17,226	18,675	14,424	15,324	20,332
	입 영	9,771	17,781	18,877	20,211	13,932	-	-	-	-	-	-	-
	%	94.0	98.4	98.8	98.7	98.3	-	-	-	-	-	-	-

자료: 국방부

-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입영률이 더욱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계절적 요인(한파), 전역 시기와 대학 복학 시기의 불일치, 대학교 학기 종료 시기(12월 말)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함.

- 2025년 1~5월 입영 계획인원 및 입영률은 2022~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례적으로 4분기 입영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⁵⁾할 때 국방부의 감액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병 입영 현황과 병력 운영률 추이를 감안할 때, 국방부 제출 추경안에 비해 추가적인 감액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1월~5월 기준 입영률은 2022년~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2년~2024년 연도별 입영률은 각각 90% 전후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평균 병력 운영률을 약 92.3%로 산정함⁶⁾.

[2022~2025년 1월~5월 기준 계획 대비 입영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인원(A)	92,944	97,114	93,760	82,235
입영인원(B)	88,673	96,032	93,049	80,572
입영률(B/A)	95.4	98.9	99.2	98.0

(단위: 명, %)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 4분기 기준, 2022년 계획인원 51,001명, 입영인원 32,027명, 입영률 62.8%
2023년 계획인원 50,810명, 입영인원 31,029명, 입영률 61.1%
2024년 계획인원 44,502명, 입영인원 28,932명, 입영률 65.0%

6) 국방부에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계획인원은 291,424명이며, 계급별로는 병장 69,339명(운영률 92.8%), 상병 95,179명(운영률 92.2%), 일병 95,179명(운영률 92.1%), 이병 31,727명(운영률 91.9%)로써 이를 가중평균한 평균 운영률은 92.3%임.

[2022~2024년 연도별 계획 대비 입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인원(A)	214,533	213,910	205,659
입영인원(B)	186,201	187,188	185,866
입영률(B/A)	86.8	87.5	90.4

자료: 국방부

- 따라서 2022~2024년 예산 이·전용(감) 및 불용액 규모⁷⁾, 병역자원 감소, 2022~2024년 병 입영률⁸⁾이 90% 전후에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년 병 입영률은 국방부 추경안에서 산정한 92.3%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방부 감액안(597억원)에 비해 추가적인 감액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인건비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방부 자체 전용이 가능한 비목⁹⁾에 해당하며, 2025년 1월~5월 기준 병력 운영률이 저조한 부사관 인건비를 병 인건비로 전용할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병 인건비의 추가 감액에 따른 국방부 인건비 예산 부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7)

[2022~2024년 병 인건비 예산 운영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 등	불용액
2022	△ 29,036	△ 52,029
2023	△ 30,000	△ 121,034
2024	△ 18,120	△ 46,125

자료: 국방부

8) 2022년도 입영률 86.8%, 2023년 입영률 87.5%, 2024년 입영률 90.4%

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01, 기획재정부

[2025년도 1월~5월 기준 부사관 운영률 현황]

(단위: 명, %)

부사관	정원	운영인력	운영률
전군 합계	134,600	113,900	84.6
육군	87,800	72,300	82.3
해군	19,200	16,900	87.8
공군	20,500	18,600	90.9
해병대	7,100	6,100	85.0

자료: 국방부

- 따라서, 병 인건비 사업의 예년 병력 운영률과 인건비 전용의 유연성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제출한 597억원 규모의 감액안 외에도 추가적인 감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체 전용권 위입범위

1.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각호 내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가. 인건비(100목)

1) 타 비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단, 다음의 경우 기타직보수(110-02목)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하며, 증액사유 및 증감액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업무대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 등에 따라 한시임 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 및 신규공무원이 임용전 수습으로 근무함에 따라 보수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2) 당해연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인원의 보수가 부족한 경우

(2) 관사 및 간부숙소(2532-301): 본예산 편성 미흡에 따른 추경
편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추경안 편성내역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여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7,862억 9,200만원 대비 105억 6,900만원(1.3%) 증액된 7,96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관사 및 간부숙소	525,977	-	786,292	786,292	796,861	796,861	10,569	1.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건의 내역사업에 대해 총 105억 6,900만원 증액 의견으로 제출되었음.
- 다만, 8건의 추경 편성 내역사업 중 육군이 추진 중인 5건의 내역사업은 당초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추경 편성이 불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본예산 편성의 미비로 인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육군의 내역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본예산 편성 미비로 인한 간부숙소 추경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추경 편성액	집행액	추경편성사유
22사단고성권 역(금화정) 간부숙소 신 축	합계	1,918	-	-	1,918	553	1,918	낙찰률 적용 오 류로 인하여 소요 대비 공사비 부족
	420-01	-	-	-	-	-	-	
	420-02	-	-	-	-	-	-	
	420-03	1,775	-	-	1,775	553	1,775	
	420-04	140	-	-	140	-	140	
	420-05	4	-	-	4	-	4	
2군단 7사단 신평리 간부 숙소 신축	합계	8,625	440	-	9,065	864	2,302	낙찰률 적용 오 류로 인하여 소요 대비 공사비 부족
	420-01	-	-	-	-	-	-	
	420-02	-	-	-	-	-	-	
	420-03	7,772	440	-	8,212	864	1,620	
	420-04	834	-	-	834	-	667	
	420-05	19	-	-	19	-	15	

사업명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추경 편성액	집행액	추경편성사유
51사단 168 연대(태행산) 간부숙소 신 축	합계	981	-	-	981	450	-	2023년도 연부액 조정(△450백만 원)에 대한 보전 이 2024, 2025년 예산 편성 시 누 락되어 공사비 부 족
	420-01	-	-	-	-	-	-	
	420-02	-	-	-	-	-	-	
	420-03	881	-	-	881	450	-	
	420-04	95	-	-	95	-	-	
	420-05	6	-	-	6	-	-	
수도군단 수도포병여 단 간부숙소 신 축	합계	5,101	298	-	5,398	450	1,939	2023년도 연부액 조정(△450백만 원)에 대한 보전 이 2024, 2025년 예산 편성 시 누 락되어 공사비 부 족
	420-01	-	-	-	-	-	-	
	420-02	-	-	-	-	-	-	
	420-03	4,595	298	-	4,893	450	1,732	
	420-04	493	-	-	493	-	202	
	420-05	12	-	-	12	-	5	
6군단 5사단 수색대대 간부숙소 신 축	합계	916	-	-	916	450	366	2023년도 연부액 조정(△450백만 원)에 대한 보전 이 2024, 2025년 예산 편성 시 누 락되어 공사비 부 족
	420-01	-	-	-	-	-	-	
	420-02	-	-	-	-	-	-	
	420-03	823	-	-	823	450	329	
	420-04	88	-	-	88	-	35	
	420-05	5	-	-	5	-	2	

자료: 국방부

- 육군이 편성한 5건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비 부족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22사단 고성권역(금화정), 2군단 7사단 신평리 간부숙소 신축사업은
낙찰률 적용 오류로 인하여 실제 소요 대비 예산을 과소 산정함.
- 51사단 168연대(태행산), 수도군단 수도포병여단, 6군단 5사단 수색
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은 2023년 연부액 조정(△450백만원)에 대
한 보전이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예산 부족이
발생함.

- 해당 5건의 내역사업은 모두 2025년 종료 예정 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이·전 용 등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거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도별 연부액 조정 및 이월 내역에 대한 체계적 추적·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경계 및 작전시설(2533-321): 추경 편성 시급성 부족에 따른
선행연구 예산 전액 삭감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추경안 편성내역

-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경계·작전시설을 개선하여 주둔지 경계 및 전·평시 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2,416억 1,500만원 대비 248억 9,500만원(10.3%) 증액된 2,66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경계 및 작전시설	-	-	241,615	241,615	266,510	266,510	24,895	10.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에는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 관련 4건의 내역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을 위한 선행연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¹⁰⁾에 따른 사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총사업비 200억 이상인 건설사업)에 해당되며, 공군은 2030년~2034년 중 추진 예정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행연구¹¹⁾를 조기 착수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을 위한 선행연구 사업에는 총 1억 8,3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1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11)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선행연구(사업계획의 적절성, 경제성, 작전성 등 분석, 약 4~6개월 소요)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시기는 중기계획 상 사업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함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 사업 추정안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 세부내역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	420-01 (기본조시설계비)	• 합계 : 183,700천원 - 인건비 : 132,078천원 · 책임연구원 : 7,245,170원 × 1명 × 8개월(45%/참여율) = 26,082,160원 · 연구원 : 5,555,500원 × 4명 × 8개월(45%/참여율) = 79,999,200원 · 연구보조원 : 14,854,660원 × 1명 × 8개월(50%/참여율) = 14,854,660원 · 보조원 : 2,785,342원 × 1명 × 8개월(50%/참여율) = 11,141,370원 - 경비 : 2,476천원(국내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 일반관리비 : 7,230천원 - 이윤, 부가가치세 : 15,183천원 - 부가가치세 : 16,700천원

자료: 국방부

○ 다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정 편성의 적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첫째, 신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은 1989년 준공된 건물이지만, 2020년 7월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양호’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음.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르면, ‘양호’ 등급은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본 작전지휘시설이 즉각적인 보수·보강, 사용 제한 및 신축이 요구되는 수준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¹²⁾.

12)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1조(시설물 안전점검)

⑥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9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상태별 조치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축, 철거,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판정받은 D등급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수·보강 등을 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E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안전등급 및 시설상태별 조치기준¹³⁾]

시설 상태	시설물의 상태 및 조치방안
양호	문제점이 없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과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하거나 필요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등을 하거나 필요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자료: 국방부

- 둘째, 당해 선행연구 사업은 추경을 통해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사업 절차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사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선행연구¹⁴⁾를 거쳐야 하며, 이후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따라서 선행연구의 착수 시점은 국방부에 따르면 통상 본 사업 착수 대비 약 3~5년 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공군은 제8전

13)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19]

14)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선행연구(사업계획의 적절성, 경제성, 작전성 등 분석, 약 4~6개월 소요)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시기는 중기계획 상 사업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함

투비행단 작전지휘시설 신축 사업을 2030~2034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선행연구 사업이 2026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라고 보임.

-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¹⁵⁾에 있으나, 선행연구비는 그 금액의 규모가 작을 뿐더러 완료 이후에도 사업타당성검토 및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사업으로 즉시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바, 선행연구 용역의 착수만으로는 즉각적인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따라서, 국방부(공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비 1억 8,37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해당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5)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 6.

(4) 시설유지관리(2536-301): 근본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일부
보수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추경안 편성내역

-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군 보유 시설물의 대지 및 구조·설비 등의 성능을 유지·보수하여,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1조 1,221억 8,200만원 대비 412억 3,000만원(3.7%) 증액된 1조 1,634억 1,200만원 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시설유지관리 사업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시설 유지 관리	1,425,811	-	1,122,182	1,122,182	1,163,412	1,163,412	41,230	3.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에는 시설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총 23건의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과 해군사관학교 호국사(護國寺) 진입도로 보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은 계단 구조체의 노후화로 인해 파손 및 타일 탈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임.
-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는 1990년 준공된 1차선 도로로, 경상시설단의 안전진단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시설물 안전등급 및 시설상태별 조치기준¹⁶⁾]

시설 상태	시설물의 상태 및 조치방안
양호	문제점이 없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과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하거나 필요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등을 하거나 필요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자료: 국방부

16)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19]

- 이에 따라,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에는 3억 5,000만원,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사업에는 1억 2,000만원이 각각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음.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단가	수량	단위	금액	산출근거
철거비 및 폐기물 공사비	125	800	m ²	100,000	- 실소요
타일 교체 공사비	312.5	800	m ²	250,000	- 실소요
소 계				350,000	

자료: 국방부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근거
공사비	93,000	소계 : 93,000천원 - 아스팔트 콘크리트 : 625.7톤×95천원 = 59,442천원 - 아스팔트포장 절단 : 600M×2천원 = 1,200천원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29a×544천원 = 15,776천원 - 차선 밑 그림 : 90M2×2천원 = 180천원 - 차선도색/용착식 실선(기호) : 200M2×40천원 = 8,000천원 - 차선도색/용착식 실선(황색) : 45M2×28천원 = 1,260천원 - 차선도색/용착식 실선(백색) : 180M2×23천원 = 4,140천원 - 텍코팅 : 3,002M2×1천원 = 3,002천원
제경비	27,000	
소 계	120,000	

자료: 국방부

- 다만, 동 사업들은 당초 편성된 공사 내용만으로는 시설의 근본적인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의 경우, 계단 구조체의 노후로 인해 타일 탈락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타일 철거 및 교체비용만 반영되어 있어, 구조체 보강 없이 타일만 재시공할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 채 외형만 보수하는 조치로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사업의 경우, 도로 하부 배수관로의 연결 마감 불량으로 표면수가 유입되어 도로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사업내용에는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도색만 포함되어 있어, 구조적 원인인 누수 문제와 지반 보강 없이 시행할 경우 단기적 임시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이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 채 외형만 보수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사업들은 종교시설 관련 보수사업으로서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안보나 전투력 유지와 직결되는 긴급한 사안은 아니므로 시급성이 높은 시설개선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보수 범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동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에는 재정 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사업들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조물 및 배수 체계 보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국방부(육군·해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비 3억 5,000만원,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해당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V. 대체토론의 요지

- 지역 장병 상생특식은 2024년 연 14회 시행에서 2025년 연 4회 시행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를 늘릴 필요가 있음.
- 타 직군 대비 지급금액이 낮은 당직근무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추경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병 인건비를 초·중급간부 처우개선 (이사화물비, ROTC 생활지원금 인상, 주거환경개선비)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육군 인사선발센터 연병장 등의 시설에는 인조잔디 시공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의 안보폰 지급 확대는 12:3 비상계엄 등에 활용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 병 인건비 사업 관련, 병무청 입영검사는 인원 산출의 오차가 적은데 비해 국방부 병 운영률 인원 산출은 오차가 큼.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024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사업 착수비 편성이 필요함.
-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2025년 10월 사업타당성조사 종료가 예상되므로, 사업 착수비 편성이 필요함.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직무대리 임종득 위원입니다.
-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3개 세부사업에서 27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3개 세부사업에서 1,010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정보보호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 23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식 사업’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족으로 인해 내실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등 예산 489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경찰·소방 등 타 직군에 비해 낮은 수준인 당직근무비 인상 소요분 등 예산 39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사업 착수가 시급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에 대해 예산 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II. 찬반토론의 요지

-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할 각 군의 무인기 연구개발 및 활용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VIII. 심사결과

1. 국방부 소관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안 : 수정의결(983.25억원 순증)

2. 방위사업청 소관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안 : 수정의결(8.53억원 증액)

※ 별 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Ⅰ. 국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국방위원회	국방부	일반회계	101,087	△2,762	98,325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853	-	853
	합 계		101,940	△2,762	99,178

II. 국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가. 국방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1) 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기본급식 (1231-301)	1,684,395	-	1,684,395	1,733,392	8,161	○ 내역사업인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신규)는 민간 위탁 급식에 대한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족으로 인해 내실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81억 6,100만원 증액	
						28,973	○ 내역사업인 ‘간부훈련급식비’(제1회 추경액 124억 300만원)는 작전, 훈련 시 군 간부의 급식비 제공을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대상인원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 289억 7,300만원 증액	
						11,863	○ 내역사업인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제1회 추경액 118억 6,300만원)은 군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 14회에서 2025년 4회 실시로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이를 8회 실시로 확대하여 예산 118억 6,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2	통신요금 (2131-304)	86,210	-	86,210	85,010	△1,200	○ 내역사업인 ‘안보폰 통신요금’(제1회 추경액 86억 4,500만원)은 군 통신간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안보 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 12억원 감액	
3	정보보호 (2131-307)	82,010	-	82,010	80,898	△1,112	○ 내역사업인 ‘안보폰 탑재 암호장비’(제1회 추경액 26억 5,300만원)는 군 통신간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의 암호장비(USIM)를 구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안보 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 11억 1,200만원 감액	
4	수송활동 (2336-301)	122,778	-	122,778	135,532	12,754	○ 내역사업인 ‘이사화물비 지원’(제1회 추경액 356억 9,947만원)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이사화물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직업 특성상 지역 간 인사이동이 잦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현 이사화물비는 실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예산 127억 5,4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5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786,292	10,569	796,861	796,411	△450	○ 내역사업인 ‘51사단 168연대(태행산) 간부숙소 신축’ (제1회 추경액 9억 8,089만원, 추경 증액분 4억 5,000만원)은 간부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간부 숙소를 신축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6	부대운영지원 (7131-315)	220,174	-	220,174	259,510	4,141	○ 내역사업인 ‘소대지휘활동비 인상사업’(제1회 추경액 207억 655만원)은 소대장의 지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소대장(초급간부)의 지휘권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활동비를 현행 월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도록 예산 41억 4,100만원 증액	
						5,753	○ 내역사업인 ‘전투역량강화비’(제1회 추경액 1,306억 8,101만원)는 지휘관의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일상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급호별 기준액 대비 91.9%만이 편성되어 경비가 부족하므로, 이를 100% 반영하도록 예산 57억 5,300만원 증액	
						29,442	○ 내역사업인 ‘당직근무비’(제1회 추경액 588억 8,344만원)는 당직근무 수행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경찰, 소방 등 타 직군에 비해 부족한 당직근무비 지급액 인상을 위해 예산 294억 4,200만원 증액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명 변경 등)

해당사항 없음.

나. 방위사업청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R&D) (2632-303)	154,678	-	154,678	155,531	450	○ 내역사업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신규)는 미래첨단 기술 및 비대칭 전력분야 연구결과를 능동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인프라 신규 구축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착수비 예산 4억 5,000만원 증액	
						403	○ 내역사업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신규)는 군용 이 아닌 별도의 연구개발용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 10월 사업타당성조사 종료가 예상 되므로 착수비 예산 4억 300만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명 변경 등)

해당사항 없음.

IV. 부대의견

가. 국방부

- 국방부는 당직근무비 인상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상된 당직근무비가 지급되도록 추진한다.